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24호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 령 제 4 1 1 호 남동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안 전 총 괄 과 2

공 고

○ 공 고 제 1 6 1 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5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 시 재 생 과 16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훈 령

남동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9. 7.

남동구 훈령 제411호

남동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동구 소속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사업장(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소속 사업장을 말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대상)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를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한다.

1. 사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2. 사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5.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6.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제6조(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평가: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여 최초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 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및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 나. 정기평가 시에는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기존 위험성 감소 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3. 수시평가: 각 목에 해당하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하는 평가
 -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실시방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한다.

-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및 교육(정기안전보건교육과 별도)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9조(평가공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사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②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주의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종사자의 판단·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의견 청취를 통하여 종사자를 필히 참여시키고 종사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감소 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 참여자는 위험성 결정 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강도)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다.

제11조(점검 및 개선활동) ① 위험성평가 이행에 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 전담자 및 이행 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나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다음번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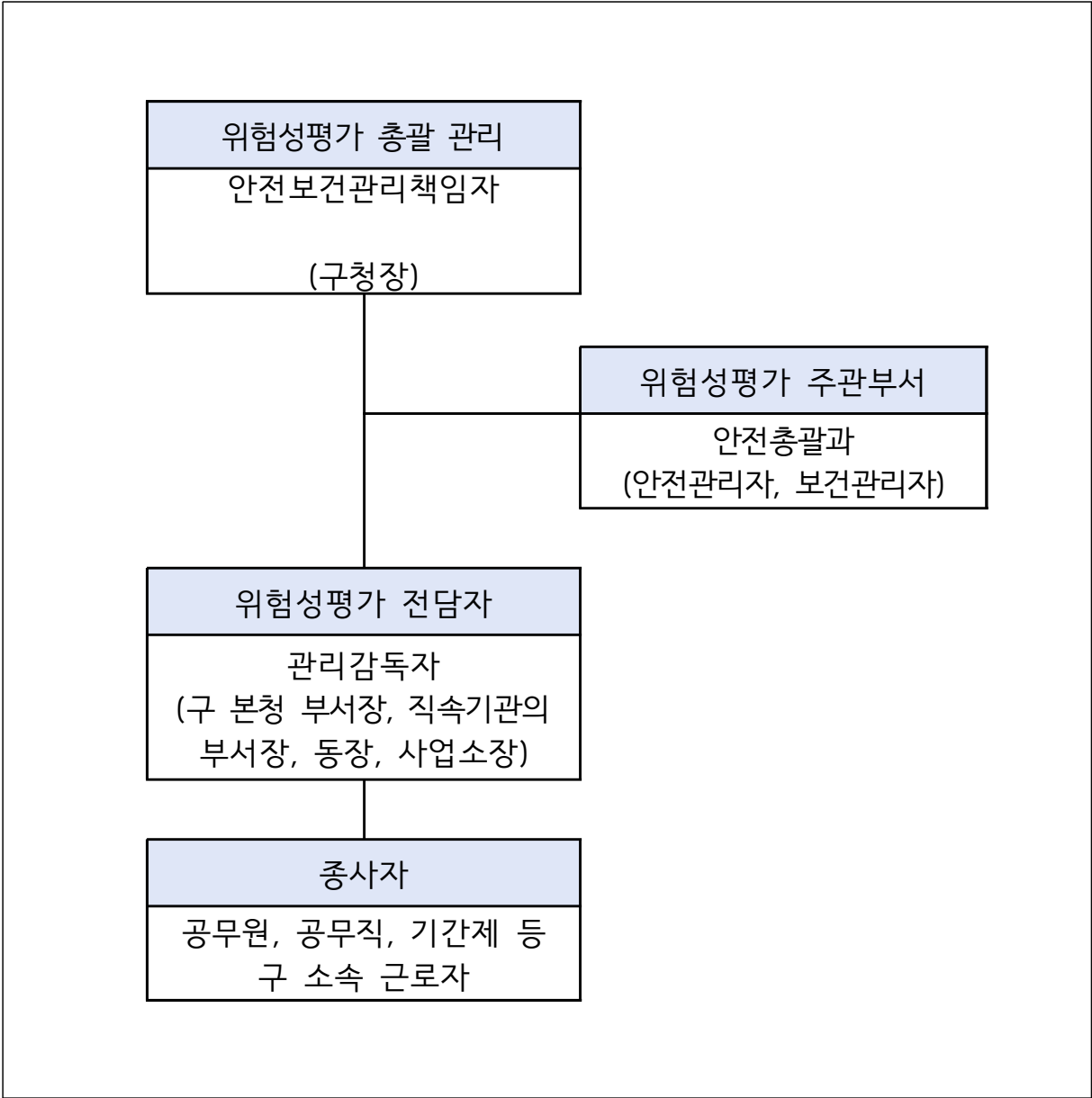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준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성평가 조직(제3조 관련)



[별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제4조 관련)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청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의지 구현 - 위험성평가 방침과 추진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교육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개선조치 이행 여부 최종 결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위험성평가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의 실행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관리 및 실행 - 사업장 위험성평가 과정 주관 및 진행 - 관리감독자 등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및 기록 유지 - 부서별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자료 등 취합, 기록 - 위험성평가 절차 적합성 검토, 사업장 위험요인 등록부 작성, 관리 - 관리감독자, 근로자 의견 청취 후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취합, 보관 - 개선조치 여부 이행점검 관리
위험성평가 전담자 (관리감독자)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동 장, 사업소장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자료 등 기록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결과 중대재해예방팀에 보고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대책 적용 가부 검토 및 감소대책 이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준수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종사자 (공무원, 공무원, 기간제 등 구 소속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적극 협조》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 - 실무상 안전보건 애로사항 적극 개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대책 적용 가부 검토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확인

[별표 3]

위험성평가 절차(제8조 관련)



1단계 [사전준비]

1. 평가대상을 작업별로 분류한다.
2. 위험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해 작업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나열, 분류한다.
3. 평가대상 작업의 다음의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한다.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작업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관계수급인 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하여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① 위험성 평가 수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사업장 점검 시 사전 준비사항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아차사고)와 질병의 기록
-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
- 유해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사항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① 위험성 평가자가 현장의 종사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② 청취조사의 실시 준비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
- 현재의 작업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람
- 유해·위험요인에 관해 판단이 가능한 사람

3)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②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의 작성

-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
-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기재

4)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①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 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사고 보고서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② 안전보건자료의 종류

-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 발생한 아차사고 보고서
- 안전보건교육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안, 신입사원 교안, 안전보건 회보 등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작업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

2. 유해·위험요인 분류

아래의 분류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목록화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유해·위험요인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유해·위험요인의 목록에 추가한다.

1) 기계적 요인

-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끼임, 충돌 등)
- 이동식 작업 도구에 의한 위험 (예: 크레인, 굴착기 등)
-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적하시 안전, 표시)
- 표면에 의한 위험 (예: 돌출, 뾰족한 부분, 미끄러운 부분)
- 미끄러짐, 전도, 추락 등에 의한 위험 (예: 바닥 전도, 난간 추락)

2) 전기적 요인

-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3) 화학적 요인

- 발암성,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 가연성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4) 생물학적 위험

- 알레르기, 바이러스성 유발 물질에 의한 위험

5) 작업특성요인

- 소음, 진동에 의한 장애
-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부적절한 자세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6) 작업환경요인

- 실내온도, 습도에 의한 위험
- 조명 밝기에 의한 작업 스트레스 유발 위험
- 작업면적, 작업통로, 비상구 등의 환경에 의한 위험

3. 위험성 추정

1)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 평가표(서식)에 기입한다.

- 작업 유형별로 위험성 평가표를 분류한다. (구분에 작업 표기)
- 각 요인별로 대분류한다.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등)
- 유해·위험요인 분류(서식)를 참조하여 작업 유형별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인자들을 기입한다.
- 작업 현장 유해·위험요인의 원인 및 현상을 기입한다.
- 당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재 안전보건조치가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기입한다.
- 본질적 대책,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착용 등으로 분류하여 기입한다.
- 당해 유해·위험요인의 작업 현장 상황, 작업 형태, 관련 설비 등이 표현되도록 기입한다.

2)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한다. (가능성 × 중대성 = 위험도)

3) 사고성 재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추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빈도) >

가능성		기 준
상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중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하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사고 결과의 중대성(강도) >

중대성		기 준
대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3단계 [위험성 결정]

1) 각 위험성을 추정한 결과를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한 뒤 위험성 평가표(서식)에 기입한다.

<위험성 판단 Matrix>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3)	중(2)	소(1)
상(3)	높음(9)	높음(6)	보통(3)
중(2)	높음(6)	보통(4)	낮음(2)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2) 허용가능한 위험성 판정

- 위험성 배점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한다.
-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 있을 경우, 더 이상 감소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현재 안전 보건관리 수준을 유지한다.
- 위험도가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도는 중대성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차례로 개선계획을 세운다.

<허용 가능 여부 판단>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 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함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① 본질적(근원적) 대책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요인이 보다 적은 재료로의 대체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② 공학적 대책

연동장치, 환기장치, 인터록, 방호문 등 설비·시설 보완

③ 관리적 대책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출입금지, 안전보건교육 등의 관리적 대책

④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 상기 ① ~ ③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거·감소할 수 없었던 위험성에 대해서만 실시

2)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한 다음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 전환, 작업시간 제한, 단축,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둔 채 종사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므로 본원적, 공학적, 관리적 대책을 취하더라도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게시, 주지 등을 통해 알린다.

- 5) 대책수립의 결과를 위험성 평가표에 기입한다. (개별사항, 공통사항 구분)
- 6) 실행한 개선 효과(위험성 제거)에 따라 감소되는 위험성 크기를 추정하고 결정한다.
- 7)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한다.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 8)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 9) 개선 일자 또는 예상 일자를 기입한다. 예상 일자를 기입한 경우, 실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위험성 크기를 결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비교하여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한다.

5단계 [위험성평가의 공유]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사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① 종사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 ②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③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④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2)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을 포함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단계 [기록 및 보존]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④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2) 위험성평가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준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고용노동부고시(제 2023-19호) 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인 「남동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제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조치로 산업재해예방의 목적하에, 관리 감독자 및 종사자 참여의 위험성평가의 정착화를 위한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하여 남동구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가의 목적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의 대상
- 평가시기 및 방법
- 평가의 절차
- 평가의 공유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 및 보존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6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5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23-25호(2023. 3. 2.)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5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7.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7-1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현지구 소3-5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사업규모

- L=165.7m, B=6.0m~6.6m, A=1,055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2023. 3. 2. ~ 준공검사증명서 발급일